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8.11.(목) 14:00
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 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 정태호 (02-2100-2861)
			사무관 김준수 (02-2100-2865)

수해피해 가게 ·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

- ◇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「금융상담센터」(☎1332)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.
- ◇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게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거나,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, 보험금 신속지급 · 보험료 납입유예,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◇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· 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, 기존 대출 ·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 추진 배경

- 행정안전부는 8.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8.9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, 위기경보 수준을 “심각”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.
- 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하여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쏠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.
 -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2 지원 내용

가. 수해피해 가게 금융지원

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

- 금융권*(은행·상호금융권 등)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.

- * ① 은행·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
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(금리, 한도 등)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< 은행권(예시) >

- 신한은행 : 피해 가게 대상 신규대출(최대 3천만원, 총 지원한도 200억원) 지원,
○ 농협은행 : 피해 농업인 대상 신규대출(최대 1억원, 우대금리 적용) 지원 등

< 상호금융업권(예시) >

- 농협 :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(세대당 최대 1천만원, 무이자)
○ 수협 :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(인당 최대 2천만원) 대출 지원

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 지원

- 금융권*(은행, 상호금융, 저축은행, 보험사, 카드사)은 수해피해 가게에 대해 일정기간 (6개월~1년) 대출원리금 만기연장, 상환유예,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.

- * 만기연장·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< 은행권(예시) >

- 하나은행 : 만기연장(최대 1년) 상환유예(최대 6개월) 지원,
○ 농협은행 : 이자 납입유예(최대 1년), 상환유예(최대 1년) 지원 등

< 카드사(예시) >

- 농협,하나카드 : 최대 6개월 상환유예, 삼성카드 : 만기시 자동 재연장(~9월),
○ KB국민카드 : 분할상환기간·거치기간 변경, 주요 카드사 : 금리우대(정상금리 대비 30% 인하)

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

- 생보·손보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,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.
-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,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(24시간 이내 지급).
 - *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,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 - ☞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·손보협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

-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.
-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(신한),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(국민), 연체금액 추심유예(롯데, 하나)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.
 - *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,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 - ☞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

-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(최대 1년) 및 채무감면 우대(70% 고정*)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* 장기연체(예: 1년 이상 연체)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

나. 수해피해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금융지원

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- 정책금융기관(산은·기은) 및 은행권·상호금융권* 등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·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.

* ① 은행·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
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(금리, 한도 등)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-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

<주요 지원프로그램(예시)>

- 산은·기은 :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(기은 : 3억, 산은 : 기업당 한도이내)
- 신보 : 특례보증 지원(보증비율 85→90%, 보증료율 0.5% 고정)
- 우리은행 :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(최대 5억원, 총 지원한도 2천억원) 지원,
- 하나은행 :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(최대 5억원, 총 지원한도 2천억원) 지원 등

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

- 정책금융기관(산은·수은·기은) 및 은행권·상호금융권* 등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.

* 만기연장·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-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.

3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(8.9.)하고,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.

-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(☎1332), 금융업권협회,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,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<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>

산업은행	☎ 1588-1500	은행연합회	☎ 02-3705-5000
기업은행	☎ 1566-2566	생명보험협회	☎ 02-2262-6600
수출입은행	☎ 02-3779-6276	손해보험협회	☎ 02-3702-8500
신용보증기금	☎ 1588-6565	농협중앙회	☎ 1661-2100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	☎ 02-2080-6607	수협중앙회	☎ 1588-1515
신용회복위원회	☎ 1600-5500	신협중앙회	☎ 1566-6000
저축은행중앙회	☎ 02-3978-600	여신금융협회	☎ 02-2011-0700
한국자산관리공사	☎ 1588-3570		

4 유의 사항

- ①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*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.
 - * [발급방법]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(주민센터, 읍·면사무소 등) →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→ 지자체 확인서 발급
 - ② 온라인 접수(국민재난안전포털 www.safekorea.go.kr) → 지자체 확인서 발급
-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-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최근 정부,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(URL)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(스팸)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-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,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
 -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,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정태호 (02-2100-2861)
			사무관	김준수 (02-2100-2865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김연준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민 (02-2100-2982)
<공동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찬 (02-2100-2964)
<공동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상 (02-2100-2992)
<공동>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 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서지은 (02-2100-2611)
<공동>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김병철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곽범준 (02-3145-8001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부국장	김형원 (02-3145-8022)
<공동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양해 환 (02-3145-7460)
		담당자	부국장	홍영호 (02-3145-7450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김준환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김충진 (02-3145-7447)
<공동>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용걸 (02-3145-6770)
		담당자	부국장	박현섭 (02-3145-6772)
<공동>	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	책임자	국 장	권화종 (02-3145-8070)
		담당자	팀 장	김도희 (02-3145-8072)
<공동>	은행연합회	책임자	상 무	김평섭 (02-3705-5050)
		담당자	부 장	김경민 (02-3705-5704)
<공동>	생명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김홍중 (02-2262-6628)
		담당자	부 장	조성준 (02-2262-6689)
<공동>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서영종 (02-3702-8580)
		담당자	부 장	권병근 (02-3702-8530)
<공동>	신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민경대 (042-720-1341)
		담당자	팀 장	한상대 (042-720-1211)
<공동>	농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변대근 (02-2080-5056)
		담당자	팀 장	정동협 (02-2080-3101)
<공동>	수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박현호 (02-2240-2200)
		담당자	팀 장	박수환 (02-2240-3201)
<공동>	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	상 무	최병주 (02-397-8602)
		담당자	부 장	성용욱 (02-397-8640)
<공동>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본부장	배종균 (02-2011-0602)
		담당자	부 장	조윤서 (02-2011-0740)